

전주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19나100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19나10012 판결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. 10. 15 선고 2018가단13088 판결

### 전문

**원고, 항소인**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
담당변호사 우승원, 진현덕

**피고, 피항소인**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, 이미령

**변론 종결** 2020. 11. 5.

**판결 선고** 2021. 1. 14.

**제1심판결**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. 10. 15. 선고 2018가단13088 판결

#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5. 체결된 매매계약을 45,218,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5,218,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5. 11. 20. 주식회사 E(이하 'E'이라 한다)과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 당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. 11. 17.이었으나, 그 뒤 2018. 11. 17.로 연장되었다.

나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E과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한 지연손해금,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,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(제10조).

다. E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. 3. 23.부터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, 2018. 4. 25. 부실처리되었다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. 9. 20. F은행에 259,788,339원(= 원금 255,000,000원 + 이자 4,788,339원)을 대위변제하였다. 원고가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E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,315,578원이다.

라. 한편, B은 2018. 3. 5.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도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하였고,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8. 3. 7. 접수 제35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### 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- 1)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- 2)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, 원고가 2018. 9. 20. F은행에 259,788,339원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였다. 그리고 E은 2018. 4. 25. 부실처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부도에 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18. 3. 23.부터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도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.
- 3)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,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### 나. 피고의 주장 요지

- 1)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F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한 적이 없었던 점, 한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2018. 9. 20.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.
- 2)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등에 알지 못했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### 다.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

- 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

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(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), 그  
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 
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 
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 
있다(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29659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본 인정사실,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E이 2018. 3. 23.  
F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F은행은 2108. 4. 24.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 
한 사실, 원고는 2018. 9. 20. 259,788,339원을 지급한 사실,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. 3. 5.에  
체결되어 2018. 3. 7.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 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재정 상태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,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 
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 
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, 결국  
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 
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 
것이다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4503 판결 참조).

3)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 
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 
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오재성**

**판사김범준**

**판사이슬아**

**별지**